



보도 일시	2022. 2. 10.(목) 12:00	배포 일시	2022. 2. 10.(목) 10:00
담당 부서	법인납세국 소비세과	책임자	과 장 김범구 (044-204-3371)
		담당자	사무관 이완희 (044-204-3392)

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더 커진다.

- 1세대 1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 30만 원으로 인상 -

-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·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'22년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였기에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.
-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휘발유·경유·LPG에 부과된 세금 중 **ℓ당 250원(LPG 161원*)**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.
 - *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로 금년 4.30.까지는 ℓ당 128원
- (환급대상자)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하여야 합니다.
 - ☞ [표] 「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여부」 참조(p.3)
- (유류구매카드)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·신한·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*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- * (롯데) 경차smart롯데카드, (신한) 신한카드경차사랑Life, (현대) 경차전용카드
- (환급방법)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(연간 30만 원 한도)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국세청은 보다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차 소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·누리 소통망(SNS)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담 상담팀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.

1 경차 유류세 환급 개요

□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의 유류세*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* (휘발유·경유) 1당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250원, (LPG) 1당 개별소비세 161원

○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·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부터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폭 증액*하였습니다.

* 한도: ('08년) 10만 원 → ('17년) 20만 원 → ('22년) 30만 원

| 경차 유류세 환급 개요 |

지원대상	혜택금액	유류구매카드 발급문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▶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휘발유·경유 리터당 250원, LPG 리터당 161원 할인 (LPG는 '22.4.30일까지 128원) ▶ 연간 30만원 한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롯데카드 1899-9955 ▶ 신한카드 1544-7000 ▶ 현대카드 1577-6000

2 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자

□ 배기량 1,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(승용·승합)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류비가 지원됩니다.

○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

○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

| 유류세 지원대상 경형자동차 |

- ◆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
- ◆ 배기량: 1,000cc 미만
- ◆ 길이 3.6m, 너비 1.6m, 높이 2.0m 이하
ex) 캐스퍼, 모닝, 레이, 트위지, 마티즈, 스파크, 다마스 코치 등

| 표 : 세대별 자동차 소유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|

경형 자동차	추가 보유 자동차	지원여부	비고
경형 승용차 1대	없음	○	
경형 승합차 1대	없음	○	
경형 승용차 1대	일반 승합차	○	서로 다른 차종
경형 승합차 1대	일반 승용차	○	서로 다른 차종
경형 승용차 1대	경형 승합차 1대	○	2대 모두 지원
경형 승용차 1대	경형 승용차 1대	×	동종 차종 2대
경형 승합차 1대	경형 승합차 1대	×	동종 차종 2대
경형 승용차 1대	일반 승용차	×	동종 차종 2대
경형 승합차 1대	일반 승합차	×	동종 차종 2대
경형 승용차 1대	개인택시사업자	×	택시 유류비 지원

※ 법인 또는 단체(개인명의) 소유 차량은 지원 제외

3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

-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·신한·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(신용·체크)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-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(1인 1카드),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.
- *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에도 사용가능, 단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

| 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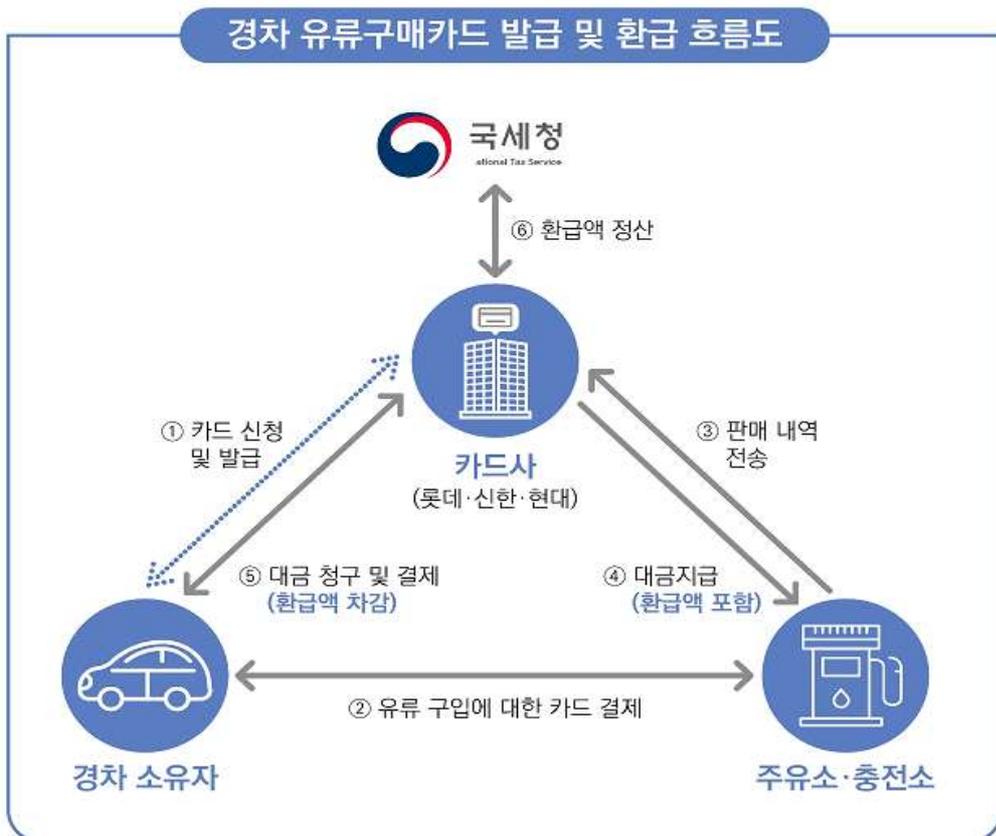
구분	롯데카드	신한카드	현대카드
인터넷	www.lottecard.co.kr 홈페이지→카드→카드신청→ 제휴카드→복지/공공→ '경차smart롯데카드'	www.shinhancard.com 홈페이지→카드→신용카드→ 공공/단체→ '신한카드경차사랑Life'	www.hyundaicard.com 홈페이지→카드안내·신청 →제휴카드→공공→ '경차전용카드(유류세환급)'
전화	• 1899-9955 → 카드신청 접수	• 080-800-0001 → 2번 경차사랑 간편 접수	• 1577-6982 → 1번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
방문 (본인)	•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	• 신한카드·신한은행 영업점	

※ 공통 첨부서류 : 차량등록증 · 신분증 사본

4

유류세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

-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 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하고 있습니다.
 - 휘발유·경유: l당 250원의 교통·에너지·환경세
 - LPG: l당 161원의 개별소비세('22. 4. 30.까지는 128원)
- 경차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,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.
 - 카드사는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(환급액)을 국세청에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.



5

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

-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하여야 하며,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,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%의 가산세가 부과되며,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6

경차 유류세 지원 상담안내

- 국세청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유류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 경차를 취득한 분에게 매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, 유튜브, 블로그, 페이스북, 트위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.
- 또한 경차 유류비 지원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국세청별로 「경차 유류세 상담팀」을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전담 상담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각 지방국세청별 경차 유류세 상담팀 |

서울청 ☎ 02) 2114-2849

충부청 ☎ 031) 888-487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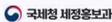
부산청 ☎ 051) 750-7399

인천청 ☎ 032) 718-6424

대전청 ☎ 042) 615-2426

광주청 ☎ 062) 236-7424

대구청 ☎ 053) 661-7426



1세대 1경차 유류세 최대 30만원 지원



지원대상

배기량 1,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 및
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

- 01 경형승용차만 1대 or
- 02 경형승합차만 1대 or
- 03 경형승용·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



지원방법

- 01 롯데·신한·현대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신청
- 02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
 - 신용카드** 결제금액에서 차감 청구
 - 체크카드** 결제금액에서 차감 동장 인출



지원금액

- ▶ 휘발유·경유 ㄹ당 250원, LPG ㄹ당 161원 할인
- ▶ 연간 30만원 한도

※ 주의사항: 유류구매카드 타인 대여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금액과 40%의 가산세 추징



참고 1

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[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]

□ 도입배경

-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0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2023년까지 연장·운영

□ 유류세 지원대상 자동차

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경형 승용·승합 자동차
 - 배기량 1,000cc 미만, 길이 3.6m, 너비 1.6m, 높이 2.0m 이하인 것
 - ex) 캐스퍼, 모닝, 레이, 트위지, 마티즈, 스파크, 다마스 코치 등

□ 유류세 지원 대상자

- 배기량 1,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(승용·승합)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 -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
 -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인 장애인·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
(「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」 제3조 제1항 제10호의2)

< 환급대상자 여부(예시) >

- 1세대 1경형차(승용 또는 승합) 소유: 대상
 -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: 대상(각각 1대)
 -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: 대상 아님
 - 1세대 1경형승용차와 개인택시 소유: 대상 아님
 - 1세대 1경형차(승용 또는 승합)와 경형차 이외의 동종 차량 소유: 대상 아님
- ※ 주의)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 명의의 단체·영업용 차량은 제외

참고 2

경차 유류세 환급 관련 주요 문답

1 경형 승용·승합차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?

- 경형 승용·승합차(차종) 해당여부는 **자동차등록증**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2 수입 경형 승용·승합차도 지원대상인가요?

- 자동차등록증에 **1,000cc미만의 경형 승용·승합자동차**로 등록되어 유류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3 경형 화물차도 지원대상인가요?

- 화물자동차는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4 중고 경형 승용·승합차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?

-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.
 -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,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.

5 「경형 승용·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 안내문」을 받은 경우 모두 지원 대상인가요?

- 안내대상자 선정기간 이후 세대원 변동, 신차 구입 등으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안내문 수령자 중 일부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- 따라서 안내문에 기재된 '**발급대상자 요건**'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* 결혼, 부모 봉양 등 세대원 구성 변동, 신차 구입에 따른 차량 소유현황 변동 등

6

보유하던 경차를 처분하고 다른 경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유류구매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?

-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기존 카드의 유류구매카드 기능이 정지되므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7

경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유류비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나요?

- 경차 유류비 지원 혜택은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의 결제대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다른 결제수단(현금, 다른 카드)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.
 - 따라서 과거에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으며, 연중 미사용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.

8

같은 주소지에 세대가 분리된 경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?

- 경차 유류비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분리된 세대를 기준으로 경차 1대만 보유한 경우라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9

주민등록표상 동거인(타인)이 동일 차종의 경차 1대를 소유한 경우 모두 유류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나요?

- 경차 유류비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'가족'의 소유차량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'동거인'의 소유차량은 고려하지 않습니다.
 - 따라서 경차 소유자 본인과 동거인 모두 유류비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.

10

경차 유류비는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- 현재 법률이 정한 지원대상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.